

서울연구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2.09.28.)

소관부서	소관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규	비공개사유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 제3항
	감사관련 업무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제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공직기강 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성평등인권센터	성희롱·내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안 상담·조사·결정·이행 관리	인권침해 관련 사안의 상담·조사·사건 처리 내용 및 관련자 개인 정보	제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3호) 개인정보보호(6호)
		인권침해로 인한 심리상담(직무 스트레스 지원 포함), 법률상담, 의료비 지원 관련 사안의 내용 및 관련자 개인 정보	제6호	
		인권침해 사안 처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권고, 조치 결과 회신 요청 등	제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3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5호)
		인권침해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문	제5호	
		인권침해 사안 관련 자문 의견 의뢰서 및 자문 결과		
	성평등·인권 존중 기반 조성 업무	인권경영 관련 위원회 회의록 및 자문 결과, 평가 결과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연구기획 조정본부	기획 조정팀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이 완료되기 전 내부 검토, 협의, 결정과정 등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조직개편안, 직제개정안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 분석 - 평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영실적보고서 등 공개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예산관련 업무	예산확정 전 예산안	제5호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미디어 소통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자료,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자료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홍보계획 ※ 검토완료 이후 공개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소관부서	소관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규	비공개사유	
경영 관리실	인사 복지팀	인력운영 계획	인력운영계획 포함 인사관련 각종 계획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재판 및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 료, 준비서면, 조서 - 소송진행상황보고서및대응방침 - 법률자문및사실조회결과	제4호	공개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해 칠 우려가 있음
		인사, 승진	직원의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등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계획, 평가자 명부 및 결과		
		채용 (시험) 관리	채용 계획	제5호 제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각 전형단계별 시험자료 및 응시 자 성적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과보고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정규 직 전환 임용계획		
		인사기록 (정규직/ 계약직 포함)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통계자 료 활용은 가능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정규직/ 계약직 포함)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 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사상·양 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개인 휴대전화번호, 주택주소, 개인 이메일, 개인사유 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수행 관련 경우는 공개 ※학력 및 경력의 경우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에 위하여 필요 한 경우는 공개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조사원 및 정리원	조사원 및 정리원 개인 인적사항		
임직원 복지후생	선택적 복지비 내역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인사위원회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제5호 제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징계위원회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보수 및 수당 (정규직/ 계약직 포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 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 성과급 지급 관련문서 -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 급여 및 수당 내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소관부서	소관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규	비공개사유	
경영 관리실	재무팀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제5호 제7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7호)	
		계약내역 사양서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계약심의사유서 등 관련서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입찰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 관련 제출자료 및 심사평가 결과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교섭완료 후 공개)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관련 심사자료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정보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자금운영	기본재산 및 자금운영 관리 ※출연재산등의 사용의무,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결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전표 및 증빙서류의 심사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회계 및 결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개인의 과세 정보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지급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소관부서		소관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규	비공개사유
경영 관리실	경영 지원팀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이름과 소속은 공개대상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 보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기록물의비밀취급인가자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분류사유	제2호	비밀에 해당 하거나 공개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안보분야 위기대 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 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 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제2호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도시 정보실	정보 시스템 팀	정보보안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등) 부분, 경비초 소위치,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 로, 경비및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위치, 장비명, 사진	제2호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 다중이용시설 안전도 조사결 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당직명령부					
정보보호시스템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운영 사항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물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					
시스템 로그파일					

소관부서	소관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규	비공개사유
연구부서 공통	연구및사업 (수탁과제 포함)	시행계획서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착수보고서 및 착수회의록, 자문회의 등 (사업 및 연구의 착수보고 후 공개, 수탁과제의 경우 위탁기관 정보공개 기준에 따름)		
		연구용역 중간·최종 보고자료 ※ 연구용역 최종 보고자료는 공개가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분만 비공개 ※예외적으로 연구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할 때에는 사유를 설명해서 비공개할 수 있음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정부,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부서 공통	귀빈참석 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주요귀빈인사가 참석하는 행사관련 숙소정보 등	제2호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시민참여 행사	시민참여행사 관련 참여 시민의 연락처 및 주소	제6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육자명단, 이수자 명단 정보 교육 강사 개인 인적사항 ※이름 및 소속과 강사비는 공개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관련 업무	이사회,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조정위원회, 원규심의위원회, 편집위원회, 인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법인, 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 등에 관한정보	경영방침·신용·경영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계약 등의 내부관리 사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민원 사무처리 관련업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제3자 특정인이 본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내용		제6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민원내용을 통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할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지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